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- 650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3호(2007.10.25.)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92호(2016.07.07.)호로 정비구역변경(경미한)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4-41호(2014.03.20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성북구고시 제2016-37호(2016.03.3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보문동1가 60-28번지 일대 「보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7년05월18일

성 북 구 청 장 인**보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행변경인가를 위한
주민공람·공고****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-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- 가. 사업명칭 :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성북구 보문동1가 60-28번지 일대
- 다. 시행 면적 : 17,837㎡
- 라. 건축 계획 : 지하2층/지상18층 8개동 공동주택(아파트) 4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,790㎡, 공원 1,021㎡

3. 공람기간 : 2017.05.22.~2017.06.07.(17일)

4. 시 행 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60-28번지 일대
- 성 명 :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65)

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26-3010)

7. 관계도서 : 보문제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업시행(변경)인가 공람의견서

사 업 명	보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 랑 기 간	2017년 5월 22일 ~ 2017년 6월 07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 명		(인)	생년월일
	주 소		전 화 번 호	
내 용				

2017. 05.

인 사

《발령 제117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이병준	성 북 구 전 입 을 명 함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강임함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근무를 명함	당 진 시	지방사회복지 서 기

2017 5. 15 자.

《발령 제119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서유리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7.05.15.~2018.06.30.일까지)	행정지원과	지 방 행 정 서 기

2017 5. 15 자.

《발령 제120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박영선	복 직 을 명 함 도시환경국 환경과 근무를 명함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서 기 보

2017 5. 17 자.

